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미국과 일본에서 배우는 임상법학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

박 찬 운*

<目 次>

- | | |
|-------------------|--------------------------------|
| I. 글머리에 | IV. 한국에서의 임상법학의 필요성과 성공을 위한 과제 |
| II. 미국의 임상법학 | |
| III. 일본 로스쿨의 임상법학 | |

I. 글머리에

로스쿨 법안이 2007년 7월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되었다. 그동안 10년이 넘게 끌고 온 로스쿨 도입 여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2007년의 여름은 전국의 40여개 대학에서 로스쿨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인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과거에 볼 수 없는 첨단 강의실을 만들고 로스쿨 전용 도서관을 만드는 등 로스쿨의 하드웨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무자 출신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한 각 대학의 경쟁도 치열하다. 일 년에 한 명의 신규 교수도 채용하지 않던 학교가 갑자기 십수 명의 교수를 집단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일까지도 나타났다. 그것뿐인가 각 대학은 이번 여름 2년 후의 로스쿨의 강의 계획을 화려하게 짜고 있다. 이것도 인가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인권법), 변호사

강의계획서이다. 아마도 한 학교마다 수천 쪽의 강의계획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렇게 교육이 된다면 미국의 로스쿨도 조만간 우리의 로스쿨을 따라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지금 짜고 있는 강의계획이 모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는 과정에서 필자는 실무가 출신의 한 교수로서 정말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다. 로스쿨의 목적은 실무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그렇다면 로스쿨은 지금의 법과대학과는 전혀 다른 교육방법론을 써야 한다. 로스쿨이 만들어진다고 하여 바로 현재의 사법연수원만큼의 실무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법대교육과는 판이하게 다른 실무지향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상황은 어떠한가. 그저 보이는 것은 전부가 학교에 대한 물질 투자, 실무가 출신 교수 채용 그리고 화려한 강의계획서 작성 그런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야 실무중심의 로스쿨 교육이 가능할까 필자는 심히 의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로스쿨을 개교하는 과정에서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자칫 무늬만 로스쿨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본다. 이럴 때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로스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로스쿨의 본고장이므로 앞으로 우리가 로스쿨을 운영함에는 매번 모델로서 벤치마킹할 나라이다. 일본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로스쿨을 시작하였지만 로스쿨의 목적이나 교육 방법은 우리가 당연히 참고해야 할 나라이다. 이들 두 나라 로스쿨의 실무교육은 어떠한지, 특히 일본이 지난 2004년 로스쿨을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였고 로스쿨 출범을 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떤 내용의 실무교육이 전국의 로스쿨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의 향후 로스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로스쿨 관련 법률이 전격적으로 통과되는 시점 필자는 학교의 배려로 일본에서 약 두 달 간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¹⁾ 덕분에 필자는 요코하마의 한 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2004년 로스쿨이 출범하기 전에 이미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소위 임상법학교육(Legal Clinical Education)이라는 문제로 이해하고 상당한 수준의 연구를 진행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몇몇 대학의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시찰단을 조직하여 수회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의 로스쿨을 시찰하여 그곳의 임상법학 교육에 대해 일본 사회에 소개하면서 로스쿨을 준비한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로스쿨 출범 전후로 미국의 대표적 로스쿨의 관계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전문가들과 임상법학 관련 심포지엄을 수 회 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1) 필자는 2007년 6월 20일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의 카나가와 대학 법학부의 법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체류한 바 있다.

필자로 하여금 큰 눈을 뜨게 한 것은 일본의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학내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의과대학에 부속병원을 두어 미래의 의사들에게 임상교육을 시키듯 로스쿨에 부속 법률사무소를 설치하여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하의 글은 이러한 충격을 동기로 작성된 것이다. 이 글은 이제까지 일본에서 나온 임상법학 교육에 관한 글과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가 로스쿨을 만들어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실무교육, 즉 임상법학 교육의 선례를 소개하고 우리의 향후 계획과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미국의 임상법학

1. 미국의 임상법학교육의 개념

법학교육에서 임상교육을 미국에서는 'Clinical Legal Education'이라 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임상법학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임상법학 교육이라는 말은 미국에서도 그 개념이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²⁾

먼저 광의의 의미로 임상법학교육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임상적 방법(clinical methodology)을 사용하는 법학교육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동일하지 않지만, 일본의 연구자들이 미국의 임상법학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대략 광의의 임상법학에는 3가지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학교 내외에 설치하는 리걸 클리닉에서 실제 사건을 상담하고 때로는 수임하여 사건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많은 로스쿨이 학교 내 혹은 학교가 위치한 곳에서 멀리 않은 곳에 법률사무실을 설치하고 실무가(변호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며 동태적인 사건 처리를 경험케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모의적 훈련을 포함하여 전문적 기능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것은 변호사들의 상담 기법이나 증인 심문 방법 혹은 검사들의 법정에서의 심문 방법 등을 학내의 시설(모의 법정 등)에서 훈련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시뮬레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

2) 道 あゆみ, “法科大学院における臨床教育の有用性を探る”, 「ロース쿨の臨床教育の100年史」, 現代人文社(2005), 166-167頁; Paul Bergman, “A ‘Lawyering Skills’ Approach to Clinical Education”, (宮川成雄 譯: 臨床法學教育: 「ローヤリング」機能からのアプローチ), 「法科大学院と臨床法學教育」(宮川成雄 編), 成文堂(2003), 318 頁.

는 학교 밖의 많은 기관 예컨대 법률사무소, 관공서, 시민단체 등에 학생을 파견하여 법률적 업무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것을 이른바 엑스턴쉽(externship) 과정이라고 부른다.

위의 3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사실상 가장 중시되는 임상교육인데, 이것을 통상 리걸 클리닉³⁾ 과정이라고 부르면서 협의의 임상법학교육이라고도 한다.

2. 미국의 임상법학교육의 역사와 실태 개관

가. 임상법학교육의 역사

미국에서 임상법학교육이 시작된 것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시작된 케이스 메서드 교수법에 서시작 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이해되고 있는 임상법학교육은 법현실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된 1920년대부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 그렇지만 그 후 한 동안은 큰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획기적 발전을 보게 된 계기는 1970년대에 포드 재단 등이 주요 로스쿨에 임상법률교육을 위한 기부금을 제공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⁵⁾

미국의 로스쿨에서 60년대와 70년대에 임상법학에 눈을 돌리게 된 또 다른 배경은 민권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로스쿨 학생들은 로스쿨에서 단지 법적 지식만을 배우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식을 바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가 임상법학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었다고 한다.⁶⁾ 이러한 배경 하에 1969년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 학생실무모델규칙(Model Student Practice Rule)이 제정되어 임상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고, 80년대의 비약적 발전을 기초로 1994년에는 임상법학교육협회와 미국 로스쿨 협회의 지원 아래 임상법학 전문지인 클리니컬 로 리뷰(Clinical Law Review)가 창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변호사협회는 1996년 로스쿨 적격인증기준에 임상법학교육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 시키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 교육은 완전히 틀을 갖추게 되었다.⁷⁾

나. 미국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현재

3) 리걸 클리닉은 로스쿨의 부설 법률사무소라는 의미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의 임상법학의 이름이기도 하다.

4) 道 あゆみ, 前掲 論文, 168頁

5) Paul Bergman, 前掲 論文, 318 頁.

6) *Ibid.*

7) 道 あゆみ, 前掲 論文, 168頁

이와 같은 역사를 거쳐 임상법학교육은 미국의 로스쿨에서 확고하게 지위를 확보하였지만 그 의의나 유용성을 어디에서 구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형태나 성격은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⁸⁾

교육 효과를 중시하여 학내 법률사무소를 선호하는 소위 인 하우스(In- House)형 클리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이 있는가⁹⁾ 하면 비용 면을 고려하여 주로 엑스텐션을 선호하는 로스쿨도 있다. 또 시뮬레이션, 리걸 클리닉 그리고 엑스텐션을 혼합한 형태의 임상법학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또한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여 환경, 이민, 장애인, 소년 사건 등으로 세분화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는 학교¹⁰⁾가 있는가 하면 전반적인 실무 수습을 목표로 일반적인 클리닉(General Clinic)을 운영하는 학교¹¹⁾도 있다. 임상법학 프로그램은 상급 학년의 선택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만 하급 학년부터 참여를 강조하고 상급 학년에는 필수과목으로 넣는 학교¹²⁾도 있다. 나아가 1학년 및 2학년의 시뮬레이션 과목과 3학년의 임상교육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종합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로스쿨¹³⁾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 프로그램은 각각의 로스쿨의 특색에 맞추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3. 임상법학의 다양한 내용

미국의 로스쿨에서 수행되고 있는 임상법학은 그 내용에 있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즉, 대학마다 각기 상당한 차이를 두면서 다양한 내용의 임상법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다양성이 임상교육에서 나타난 배경은 재정적 기반이 대학마다 상이하고, 교수진의 전문영역이 다양하며, 교수진의 임상교육에 대한 열의도 편차가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자연스럽게 각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임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로스쿨의 임상법학 교육의 내용을 망라해 보면 대략 다음의 10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⁴⁾

A 유형: 학내에 법률사무소(Legal Clinic)를 개설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정 종류의

8) *Ibid.* 168-169頁

9) 후술하는 하버드의 Hale and Dorr Legal Service Center가 하나의 예이다.

10) UC 버클리나 예일대 그리고 뉴욕대 같은 곳이 예이다.

11) 뉴멕시코 대학의 Community Lawyering Clinic이나 Law Practice Clinic이 여기에 해당한다.

12) 뉴멕시코 대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13) 뉴욕대 로스쿨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4) 宮川成雄, “法科大學院における 臨床法學教育の 可能性”, 「法科大學院と臨床法學教育」(宮川成雄 編), 成文堂 (2007), 5頁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까지 담당한다. 학생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임상교수의 감독 하에 직접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하고 사건 수임에도 관여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사무를 익힌다.

B 유형: 특정 종류의 사건(예, 가정폭력, 소년사건, 저소득층 가옥 임대차 사건, 이민/난민 사건 등)에 한정하여 학교 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하여 위의 A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 지도를 한다.

C 유형: 변호사 업무 중 전형적으로 필요도가 높은 업무(예, 증언녹취)를 추출하여 직접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 집중적으로 실습한다.

D 유형: 특정 공익문제(예, 시민권 문제, 환경 문제, 판결 확정 후의 사형수의 원죄 문제 등)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직접 사건 해결함과 동시에 그 공익 문제에 대하여 입법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도 한다.

E 유형: 모의재판

F 유형: 변호사 업무의 기본 기능(예, 인터뷰, 법률상담, 증언 녹취, 교섭 등)을 롤 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모의 연습한다.

G 유형: 특정 분야의 이론 과목에서 현실의 사건(예, 기업 합병, 매수 등)을 소재로 하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에 계약서를 검토하고 거래 내용의 교섭 등을 모의 훈련케 한다.

H 유형: 제휴 법률사무소에서 파견하여 법률 사무를 실습케 한다.

I 유형: 제휴 정부기관에서 법률 사무를 실습한다.

J 유형: NGO 등 공익단체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실습한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면 임상법학의 개념을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광의의 임상법학의 개념인 3개의 요소가 담긴 과정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A-D는 의뢰인 서비스형(의뢰인

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변호사의 일을 배우는 과정)으로 통상은 로스쿨 부설 리걸 클리닉에서 이루어지며, E-G는 기능 시뮬레이션형이라 할 수 있는데 변호사의 주요 업무를 모의 사건 등을 통해 그 수행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며, H-J는 엑스틴션형으로 외부의 법률 사무실이나 관련 기관에 파견되어 실무를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유명 로스쿨은 통상 위의 3개의 과정 중 하나나 둘에 특장을 가지면서 법률 실무 교육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컨대 하버드 로스쿨은 첫 번째 유형의 실무교육에 강한데, 그곳은 보스턴의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로스쿨 직영의 법률 사무소를 설치하여 일반 민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동부의 대표적 명문 로스쿨인 하버드 로스쿨과 뉴욕대(NYU) 로스쿨의 임상 법학 교육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 교육의 실제적인 내용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4. 하버드 로스쿨의 임상법학¹⁵⁾

가. 하버드 로스쿨 임상교육의 특징

하버드 로스쿨의 임상법학은 미국의 로스쿨 중 최대의 규모와 예산을 자랑하는 것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다. 연간 200만불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3학년 학생의 40% 정도가 어떤 형태이든지 임상법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학내에는 형사 클리닉으로서의 형사사법연구소(Criminal Justice Institute)가 있고, 민사 클리닉으로서의 보스턴 시내에 헤일 도어 법률부조센터(Hale & Dorr Legal Service Center)가 있다. 그 외에도 엑스틴션으로 검찰청, 공익변호사 사무소 및 민간 법률 사무소 등에 학생들이 파견되어 실무 수습을 받을 수 있고,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주와 인디언 거주지역 등의 원격지에서 행해지는 클리닉과 환경 문제 등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하는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뉴멕시코주에 교수 및 학생이 함께 출장을 나가 사형수를 변호하는 클리닉은 대단히 특징적인 활동이라고 한다.

나. 임상법학(리걸 클리닉)의 운영

(1) 규모 등

15) 이 부분은 와세다 대학 임상법학교육연구소가 2002년 4월 미국 및 캐나다의 로스쿨의 임상법학 상황을 현지 조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한다. 하버드 로스쿨의 임상법학 분야 실태 보고는 와세다 대학 木棚照逸 교수가 담당하였다. 宮川成雄 編, 法科大學院と臨床法學教育, 105-113頁

하버드 로스쿨은 미국 전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 임상법학으로 설치되어 있는 과목만 40여개에 이른다. 2학년 및 3학년 학생이 주된 대상이며 약 400여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한다. 이것은 당해 학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하는 수치이다. 그 이외에 학점 취득의 대상은 아니지만 1학년 학생 중 50인에서 80인 정도가 클리닉에 참여한다고 한다.

(2) 임상법학의 교육 중점

하버드 로스쿨이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중시하는 교육의 중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법률전문가로서의 기능과 가치관, 윤리관을 확실히 몸에 익히도록 한다.

법의 이론 및 원칙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의 습득도 중시한다. 예를 들면 고용 프로그램과 같은 과정에서는 현실의 법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법률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정책론으로 나타난다.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법률 지식이 단지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지식을 터득케 하는 방법인데, 예컨대 검찰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 경우라면 학생을 직접 검찰청에 파견하여 검사의 역할을 보고 듣게 하는 것이다.

바른 교육 목표, 적절한 양의 일, 질 좋은 감독에 의해 순수 학문적인 분야와는 다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

(3) 헤일 앤 도어 법률부조센터

헤일 앤 도어 법률부조센터(Hale & Dorr Legal Service Center)는 보스턴 시내에 있는 하버드 로스쿨 직영의 민사 클리닉을 말한다. 1993년에 어느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200만불의 기부를 받아 그것을 재원으로 공장 건물을 매수하여 법률사무소로 개축하였다고 한다. 이 건물은 변호사 사무실이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현장이라는 성격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데, 1층에는 리셉션 데스크, 대기실, 상담 전용방,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고, 2, 3층은 변호사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일을 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센터는 현재 사회보장, 주거문제, 가족 문제 등 분야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각각 담당 변호사와 클리닉 수강 학생들이 합동으로 일을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모두 이곳의 담당 변호사들이 맡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로스쿨의 교수들이 내방하기도 한다. 이 센터에서는 1학기에 약 10여건의 사건을 담당변호사와 학생들이 논의하면서 처리해 나간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변호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강의실에서 배운 법률지식을 직접 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며, 강의실의 이상과 실제 사건의 현실에서 오는 괴리도 경험하게 된다.

(4) 형사사법연구소

하버드 로스쿨에는 의뢰인 서비스형의 리걸 클리닉이 위의 헤일 앤 도어 법률부조센터 이외에 하나가 더 있다. 형사사법연구소(Criminal Justice Institute)가 바로 그것이다. 이 클리닉은 1990년에 당시 공설변호사(public defender)였던 Charles J. Ogletree 변호사에 의해 설립되어 그가 현재까지 소장(교수)으로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곳을 통해 형사사건의 변호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¹⁶⁾ 학생들은 이 클리닉에 참가하여 일을 하기 전에 5-6시간 정도 집중적인 준비수업을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은 공판변론 수업, 배심심리 및 인터뷰 그리고 보석 시뮬레이션 등 클리닉이 만든 오리엔테이션을 말한다. 학생들은 이 클리닉에 참석한 후 매주 2회에 걸쳐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클리닉은 이와는 별도로 연 5회 변호 기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클리닉에서 학생들이 직접 사건을 맡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학기(10월-1월, 2월-5월) 초가 되면 학기 내에 종료가 가능한 사건을 학생들에게 배당을 한다. 이 사건은 지역의 재판소, 공설변호사 사무실 등으로부터 오는 데 이를 위해 학교는 이들 기관과 무료 변호인 소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평균적으로 한 학생이 연간 6-8건을 담당하며 주로 경범죄, 법정형이 징역 2년에서 5년까지의 비교적 경미한 사건과 17세 미만의 소년사건을 담당한다. 사건 처리는 학생이 주임 변호인이 되며 전문변호사인 지도교수가 이를 지원한다. 클리닉에는 4인의 전임교수가 있는데 이들은 매학기 1인당 5-8명의 학생을 지도한다. 지도교수는 매주 학생들이 작성한 다양한 문서를 살펴면서 비평하고 조언한다. 학생은 주 20시간을 클리닉을 위하여 일하고 8학점을 취득한다.

학생이 담당하는 사건은 종종 공판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법정에는 학생 변호인이 지도교수와 함께 나가며 교수는 법정에 앉아 필요에 따라 법대에 나가기도 한다.¹⁷⁾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면 대부분 학생들이 철저히 준비하여 온 사건이므로 대부분 지는 일은 없다고 한다.¹⁸⁾

16) 메사추세츠주법에 의하면 학생의 소송활동은 로스쿨 3학년이 되어야 하며 일정의 과목(증거법, 공판변론기술 등)을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17) 하버드 로스쿨이 소재하는 메사추세츠주에는 주 최고법원이 정한 학생실무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2학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3학년부터 학생의 소송활동을 인정한다. 단, 학생이 법정의 발언, 심문, 서면제출 이상의 것을 하고자 하면 감독자가 항상 필요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감독 변호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宮川成雄 編, 法科大學院と臨床法學教育, 108頁)

18) 클리닉 관계자 일본의 방문단에 말한 것으로는 지난 10년간 폐소한 사건은 1건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5. 뉴욕대(NYU) 로스쿨¹⁹⁾

가. 뉴욕대 로스쿨 임상법학의 특징

뉴욕대의 임상법학 교육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임상교육 과정을 학년마다 구조화하여 학생을 1년차부터 참가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뉴욕대의 임상교육 프로그램의 구조는 ① 로스쿨의 1학년생의 필수과목으로서 설치된 변호사로서의 기본 기능을 시뮬레이션에 의해 체험케 하는 프로그램(로이어링이라 함), ②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기능(응용 레벨)에 관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③ 3학년생을 대상으로 설치된 실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취급하는 프로그램(협회의 클리닉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임상교육 프로그램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전문적 클리닉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로스쿨의 표준적인 리걸 클리닉 과정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빈곤한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법조 자격이 있고 실무 경험이 있는 전임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이 변호사로서의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다. 뉴욕대는 이러한 표준적인 클리닉을 다수 설치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을 사형제도가 엄격한 주에 파견하여 사형수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형수 클리닉, 정책 제안과 소송 사건 이외의 실무를 경험케 하기 위해 학생을 정부기관 및 민간 NGO에 법무(法務) 스텝으로 파견하는 클리닉 등 전문적인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클리닉 중 대표적인 것은 사형수 변호 클리닉(Capital Defender Clinic), 민사 법률부조 클리닉(Civil Legal Services Clinic), 시민권 클리닉(Civil Rights Clinic), 가족 관계 클리닉(Family Defense Clinic), 연방형사사건 변호 클리닉(Federal Defense Clinic) 및 정부 민사소송 클리닉(Government Civil Litigation Clinic) 등이 있다.

나. 임상법학교육의 구성

위에서 설명한 각각의 학년에 맞추어진 임상법학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학년 과정의 필수과정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레벨로 로이어링이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이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임상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레벨 프로그램의 교수와는 달리 임기 4년으로 뉴욕대에 고용된 젊은 실무가들이다. 1학기(1학년)에는 리서치와 라이팅

19) 이 부분은 와세다 대학 임상법학교육연구소가 2002년 4월 미국 및 캐나다의 로스쿨의 임상법학 상황을 현지 조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한다. 뉴욕대 로스쿨의 보고는 와세다 대학 青水則幸씨가 담당하였다. *Ibid.* 7-97 頁

(writing)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내용의 교육을 함으로써 변호사로서 필요한 법률기능을 배운다. 교육 방법은 교수로부터의 피드백(즉, 학생이 한 것을 교수가 평가하여 돌려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학기에는 각 로이어링 담당 교수로부터 각각 3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뢰인 및 증인과의 면접, 교섭 등을 함께 있어서의 기법을 배운다. 이 교육의 목적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함께 있어 의뢰인 등의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와 법률가의 사고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학년 과정에서 선택과정으로 실시되는 소송(민사 및 형사) 기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우선 과제가 부여된다. 그 과제에 대하여 학생 간에 계획을 세워 롤 플레이(의뢰인, 증인, 상대방 등으로 나눈 역할극)를 실시한다. 예컨대 목격 증인의 녹취 등을 행하는 과정이 시뮬레이션의 한 대상이 될 수 있는 데 이 경우 그 전 과정은 비디오로 촬영된다. 교수는 학생들의 계획과 실시된 과정(비디오 녹화물)을 보면서 계획과 실기 모두를 평가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 비판적으로 스스로 변호사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사고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남 앞에 서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셋째, 3학년 과정에서 실시되는 현실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실제로 수입하여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뉴욕주의 법에 따라 담당 교수와 직접 법정에 출정하여 실제 변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임상법학 전체를 광의의 클리닉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실제 변호사와 같은 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협의의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클리닉에서는 학생은 의뢰인을 실제로 대리하고 교수는 학생의 결정이나 소송 준비 등을 원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감독 교수가 8명 정도의 학생을 지도하며 의뢰인의 선별은 각각의 클리닉에 따라 다르다.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통상 학교생활의 절반을 이 클리닉에 보낸다고 한다. 한 건의 사건에 대해 여러 학생들이 달려들어 심사 고하여 사건을 처리하므로 그 결과도 좋고, 당연히 의뢰인으로부터 호평을 받는다고 한다.

6. 소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의 로스쿨 교육에서 임상법학이 차지하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한 마디로 말하면 미국 로스쿨의 실용적인 교육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미국의 임상법학을 조금 단순화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임상법학은 협의의 의미로는 로스쿨에 부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리걸 클리

닉)에서 학생들에게 변호사의 기본적인 실무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광의로는 협의의 리걸 클리닉에 각종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포함한 실기 교육 그리고 학교 밖의 법률사무소나 국가 기관, NGO 등에서 실시하는 엑스틴션 등을 포함하는 교육으로 법학 지식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스킬을 교육하는 과정을 말한다.²⁰⁾

둘째, 협의의 임상법학인 리걸 클리닉은 마치 의과 대학의 부속 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 부속의 법률 병원인 법률사무소에서 실제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를 전문 변호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셋째, 위와 같이 리걸 클리닉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로스쿨 교육은 각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미국 전역에서 예외 없이 실시되고 있고 점점 고도화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유명 로스쿨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전문 변호사를 리걸 클리닉의 전임 교원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로스쿨의 특색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III. 일본 로스쿨의 임상법학

1. 일본의 임상법학의 개요

일본은 지난 2004년 소위 일본식 로스쿨 제도를 시작하였다. 미국식 로스쿨을 지향하였지만 일본의 사정상 법학부를 존치시킨 채 출발한 일본 로스쿨은 이제 출범 4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제도 정착에 갖은 애를 쓰고 있다. 특히 로스쿨을 실시하면서도 저조한 신사법시험의 합격률 때문에 많은 로스쿨이 현재 기로에 서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최소한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주요 대학과 지방의 명문 대학들은 로스쿨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래의 법학부 교육과는 구별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수진을 다양화하고 있고 특히 실무와의 연계를 위해 학교마다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임상법학과 관련된 커리큘럼은 2004년 개교 당시부터 대부분의 로스쿨이 미국식 로스쿨의 기본 개념을 받아 들여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다.²¹⁾ 각

20) 협의의 임상법학은 리걸 클리닉을 말하며 광의의 임상법학은 리걸 클리닉에 시뮬레이션 교육 및 엑스틴션 교육을 포함한다.

21) 현재 로스쿨은 74개인데 그 중에서 리걸 클리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52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須綱隆夫, “日本における臨床法學教育の發展と課題”, 「法曹養成と臨床法學教育」(宮川成雄 編), 19頁

학교의 자원과 환경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 로스쿨의 임상법학 교육도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리걸 클리닉만 놓고 보아도 와세다 대학과 같이 변호사 법인 법률사무소를 설치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기존의 무료 법률상담소를 거점으로 센터를 설치한 학교가 있으며 시설의 설치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로스쿨의 무료 법률상담 체제를 강화하는 학교도 있는 등 다양하다. 그리고 변호사회와 연대하여 변호사회의 공설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리걸 클리닉 과정을 만든 학교도 있다. 이렇듯 임상법학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²²⁾ 따라서 일본의 임상법학의 현황을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두 개의 대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임상법학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 곳은 현재 일본 로스쿨 중 임상법학 분야에서 가장 선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와세다 로스쿨의 경우를 소개한다.²³⁾ 와세다는 로스쿨 출범 이전에 실무가 교수를 영입하여 미국 및 캐나다의 주요 로스쿨을 직접 견학하여 미국의 임상법학의 정수를 받아들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였고, 로스쿨 출범 이후에도 그 규모나 커리큘럼의 다양성에 있어 타 대학을 압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대학은 요코하마 소재의 카나가와 로스쿨로 지역형 소규모 로스쿨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와세다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학교이나 필자가 이곳을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필시 지방대학에서 서울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 로스쿨을 개교하는 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²⁴⁾ 일본의 명문 로스쿨과 그렇지 못한 대학은 어떻게 임상법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함께 보자는 것이다.

2. 와세다 로스쿨의 임상법학의 내용

가. 교수진

와세다 로스쿨은 2004년 출범 때부터 매 학년 300명을 뽑는 주요 대학 중의 하나이다. 와세다의 교수진은 2007년 7월 현재 전임교수가 76명, 겸임 교수 81명이며 전임 교수 중 20명은 실무가 출신(12명은 변호사 출신, 4명은 판사 출신, 4명은 현직 판·검사가 파견을 나와 있음)

22) *Ibid*

23) 이하의 상황은 로스쿨 출범 직전 2003년 7월 22일 와세다 대학에서 열린 '와세다 대학 오픈 세미나'에서 와세다대학을 비롯하여 법정대학, 국학원대학, 입명관대학, 중앙대학, 나고야대학, 용곡대학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로스쿨에서의 임상법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와세다 대학 측에서 준비한 발표문(宮川成雄 編, 法科大學院と臨床法學教育, 203-263)과 그 후 발전된 상황에 대해서 와세다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연구소가 2007년 발간한 임상법학 교육에 관한 종합보고서(早稻田大學大學院法務研究科, 「リーガルクリニックによる臨床法學教育に關する 理論的 實踐的 研究」, 2007. 5.) 및 필자가 2007년 7월 31일 직접 와세다 로스쿨을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간담을 통해 얻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24) 카나가와 대학은 필자가 2007년 여름 방학 기간 동안을 보낸 바 있어 그 운영상황을 상세히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며, 겸임 중 실무가 출신은 36명이다. 와세다는 임상법학교육을 위해 임상법학교육연구소를 만들었으며 12명의 전임 교수와 그 이상의 객원교수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뒤에서 보는 ‘변호사 법인 와세다 리걸 클리닉’을 만들어 임상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나. 임상법학 프로그램의 기본 이념

와세다의 임상법학의 이념은 로스쿨의 교육 이념을 ‘실무와 이론의 가교’로 보고 이에 맞는 교육방법으로 임상법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은 살아 있는 법을 배우고 법률가로서의 책무를 체득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임상교육의 목적을 단지 실무적 훈련의 장으로서 현재의 실무를 승계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행 실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론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실무의 모습을 모색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다.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

(1) 발전해 가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서서히 완성도를 높여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일본의 대학에서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을 해나가는 것인 만큼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임상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교육에 정열을 쏟고 있는 교수들은 로스쿨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적절한 임상법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데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2) 실무가와 연구자 교수의 협력 체제에 의한 프로그램

임상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무가와 연구자가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협력 체제에 의해 법학 이론을 현행 실무에 반영이 가능하게 되고 교수 집단도 실무가와 연구가라는 이원 체제를 피할 수가 있다.²⁵⁾ 이런 개념 하에서 와세다 리걸 클리닉에는 전임교수 12명 중 절반 가량의 교수들은 순수 연구자 출신인데, 이들은 로스쿨이 시작되면서 변호사로 등록하여 리걸 클리닉에서 실무자 출신 교수들과 함께 실무를 겸하고 있다.

25) 일본의 로스쿨은 출범 초기부터 실무가 출신 교수와 연구자 출신 교수들의 관계 정립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다. 이것은 많은 교수들이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임상법학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제대로 교수진에 편입되지 못한 것을 미국 로스쿨 임상법학의 문제로 꼽으며 일본에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와세다 임상법학의 기본 개념으로 실무가와 연구자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3) 학생이 실질적,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로스쿨 학생이 참여하는 임상법학은 단지 교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송 업무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이 실제 소송 업무에 참여하는 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으므로 주체적 참여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주체적 참여 방법은 최대한 개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의 요구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라. 프로그램의 특징과 운영 방법

(1) 특징

광의의 임상법학을 지향

임상법학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와세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의의 임상법학, 즉 협의의 리걸 클리닉, 시뮬레이션 교육 및 엑스틴십을 포함하는 의미로 임상교육을 실시한다.

전문 리걸 클리닉의 설치(협의의 임상법학)

미국의 로스쿨의 경험을 살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한다.²⁶⁾ 이를 위해 와세다 로스쿨은 부설 법률사무소인 ‘변호사법인 와세다 대학 리걸 클리닉’을 설치하였다. 이 클리닉의 이미지는 와세다의 소개에 의하면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같이 그곳에서 최첨단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법 분야에서도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최첨단의 법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학생이 각각 원하는 전문분야를 배울 수 있는 체제”라고 한다.

이 클리닉에서는 학생이 변호사 교수와 함께 실제로 각양의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의뢰인을 만나 거기에서 변호사의 업무, 변호사의 사건 해결 방식 등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동 클리닉의 운영 예산은 기본적으로 와세다 대학 본부가 부담하고 있다.²⁷⁾ 리걸 클리닉은 기본 법률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상대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26) 이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클리닉은 민사, 형사, 헌법, 지적재산권, 노동, 젠더, 가사, 외국인 클리닉 등 8개가 있다.

27) 필자는 와세다 리걸 클리닉의 관계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리걸 클리닉의 법적 지위를 물어 보았다. 필자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일본이나 한국 모두 변호사법에 의해 비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사무실의 설치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와세다 리걸 클리닉은 일용 명칭에서 와세다 대학이 설립한 변호사 법인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었다. 와세다 관계자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법인의 설치 전임교수와 객원교수로 있는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와세다 로스쿨과 독립하여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이 변호사 법인과 와세다는 위탁 계약관계를 통해 와세다 로스쿨 학생의 임상법학교육을 담당한다고 한다. 사실상 변호사 법인의 모든 재원은 와세다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비변호사에 의한 법률 사무소는 만들 수 없다는 변호사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런 형식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있으며 2학점을 부여한다.²⁸⁾

(2) 형사 클리닉의 운영 방법

와세다 리걸 클리닉은 8개의 분야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마치 종합병원의 전문 과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됨) 이 중에서 대표적인 클리닉인 형사 클리닉을 소개하고자 한다.²⁹⁾ 이것을 보면 와세다의 리걸 클리닉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형사 클리닉 운영의 기본

2007년 현재 형사 클리닉의 담당 교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교수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변호사와 동일한 정도의 활동을 요구한다. 2004년과 2005년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채 시험 운영을 하였고 2006년부터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30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4명 1조로 5개의 수사 변호조, 5명 1조의 1개 지방재판소 공판 변호조 및 5명 1조의 1개 항소변호조를 구성하였다.³⁰⁾

참가학생의 조건

등록 학생은 3학년 학생으로 이들은 1학년 때 형법, 형사소송법, 2학년 때 법조윤리, 형사소송 실무의 기초 등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다. 이들 학생들은 형사 클리닉에 참여하면서 변호사의 비밀보호 의무를 숙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퇴학 처분도 포함하는 엄한 제제도 달게 받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변호사 단체의 이의는 이제껏 없다고 한다. 필자가 이에 대해 다른 대학의 경우를 확인하였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였다. 현재까지 학내에 법률사무실을 설치한 대학은 모두 9개인데 그 중에서 국립대학인 오카야마 대학(岡山大學)의 경우는 아주 특이하였다. 이 대학에서는 전임 교수들로 학내 법률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회의 협조(오카야마 변호사회에는 법과대학원 지원 위원회가 있음)를 받아 학내 법률사무실을 운영할 변호사를 공개 모집하였다. 이렇게 해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지원하여 동 변호사를 운영 변호사로 하는 오카야마 로스쿨 부설 법률사무소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은 榎本康浩, "國立大學法科大學院におけるクリニックの實情", 「로스쿨연구」(2006. 6), 34頁 참고

28)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현재 한 학년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1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29) 이하는 현재 형사 클리닉의 담당 교수인 四宮 啓 교수가 형사 클리닉의 상황을 정리한 글(早稻田大學における 刑事クリニックの 挑戦)을 바탕으로 소개한다. 위 글은 와세다 리걸 클리닉이 지난 5년간의 임상법학교육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보고한 다음의 연구 보고서에 실려 있다. 早稻田大學大學院法務研究科, 「リーガルクリニックによる臨床法學教育に 關する 理論的 實踐的 研究」, 2007. 5. 356-360頁

30) 따라서 총 7개의 조를 2명의 교수가 적절하게 분담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

등록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클리닉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1일간의 집중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오전에는 두 명의 교수들로부터 형사변호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을 받고 이어 와세다 인근의 경찰서를 방문하여 접견실 및 조사실 등을 견학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관할 구역 내의 범죄정세 등을 설명 받는다.³¹⁾ 오후에는 동경지방법재판소에 가서 법정을 방청하고, 재판이 종료된 후 담당 재판부 및 관여 검사와 법정에서 질의·응답의 간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은 클리닉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한다.

사건의 수행 과정

사건은 주로 두 명의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동경 제2변호사회의 당변변호사 제도³²⁾를 이용하여 접하게 된다. 변호사회는 경찰서 등에서 피의자가 당변변호사를 요구하면 와세다 리걸 클리닉에 연락을 한다. 그러면 두 명의 담당 교수는 순번을 정해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대동하고 경찰서로 향한다. 교수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이 접견에 참여하고 학생은 교수의 지도 아래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 교수는 가끔씩 학생이 피의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학생은 교수를 대신하여 피의자의 권리 및 절차 설명하고 사정의 청취와 피의자가 억울해 하는 사항 등을 확인해 간다.

또 다른 사건은 국선변호사건인데 이것은 법원이 변호사회를 통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리걸 클리닉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다.

수입의 조건

형사 클리닉이 제공하는 변호활동은 무료이다. 따라서 피의자 및 피고인은 원칙으로서 변호사를 의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다. 단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 해도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교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수가 있다. 그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이 정식으로 수입되는 과정은 클리닉 내의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형사 담당 교수 2명, 연구자 출신 교수 3명으로 구성되는 데, 주로 사건의 교육적 성격을 따

31) 이러한 관련 기관의 방문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였지만 학기가 계속될수록 관행화 되어 지금은 상당히 기관으로부터도 협조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32) 이 제도는 1992년 이래 일본의 전국의 변호사회(52개)가 모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사회에 접견을 요청하면 그 날의 당변변호사가 달려가 접견에 응하고 사건의 의뢰를 요청하면 저렴한 보수만 받고 변호에 응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본의 구속 사건의 절반은 이 제도에 의해 변호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1993년 서울지방법변호사회에서 당직변호사 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져 가부를 결정한다.

3. 카나가와 대학 법과대학원

가. 카나가와 대학 법과대학원 소개

카나가와 대학의 법과대학원은 동경 인근의 요코하마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매년 50명의 학생을 뽑는 일본의 가장 작은 규모의 로스쿨이다. 이 학교에는 현재 14명의 전임교수가 있고 그 중에서 실무자 출신 교수는 4명이다. 사실 지명도에 있어서 위의 와세다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로스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채용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학교도 로스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내의 로스쿨 중 평균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데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대로서 중앙의 와세다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 카나가와 법과대학원의 임상법학의 내용³³⁾

소규모의 로스쿨이라 할지라도 임상법학의 이념과 내용은 대규모 로스쿨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학교의 사정과 지역적 특색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카나가와 로스쿨의 임상법학은 크게 법률상담소에서 실무를 익히는 리걸 클리닉 과정(협회의 리걸 클리닉)과 법률사무소 등으로 파견을 보내는 엑스텐션쉽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나가와 로스쿨이 동경의 대규모 로스쿨과 두드러지는 것은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관계이다. 카나가와 로스쿨이 소재하는 요코하마 변호사회는 이 로스쿨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리걸 클리닉에서의 법률상담이나 엑스텐션쉽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연수교육을 지원한다.³⁴⁾

(1) 리걸 클리닉의 개요

(가) 대상학년

리걸 클리닉 과정은 기본적으로 2학년 및 3학년 이수과목으로 운영된다. 학점은 2학점으로 배정되어 있다.

33) 이하의 내용은 필자가 2007년 6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카나가와 대학 법학부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직접 조사한 내용이다.

34) 필자의 생각으로는 카나가와 로스쿨이 이렇게 지역 변호사회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실무자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상법학 교육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나) 리걸 클리닉의 장소와 상담 내용

리걸 클리닉 과정은 크게 두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학내에 설치된 무료 법률상담소이고 다른 하나는 요코하마 시내(미나토미라이)에 있는 요코하마 변호사회의 법률상담소에서 이루어진다. 전자는 학교의 실무자 출신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학생을 지도하고 후자의 경우는 지역의 변호사들이 실제로 법률상담을 하는 곳에 학생들이 나가 변호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것이다. 학교 내의 법률상담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내용의 상담을 하는 데 일반 민사상담³⁵⁾, 자치체 행정상담³⁶⁾ 및 외국인 인권상담³⁷⁾을 하고 있다. 미나토미라이 상담소는 연중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실시되며 1회 4건의 상담을 하며 건당 30분의 상담과 그 후에 10분 정도의 학생에 대한 지도를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담당 변호사는 로스쿨의 지도교수는 아니지만 로스쿨과의 사전 협의로 리걸 클리닉의 취지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일반 민사사건을 주로 상담하지만 특히 한정된 것은 아니며 별도의 분야가 상담될 수도 있다. 로스쿨에서는 이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요코하마 변호사회의 변호사들과 연간 수회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다) 엑스텐션 과정

카나가와 로스쿨의 엑스텐션의 특징은 학내에서 실무가 교수들로부터 사전 위명업을 충분히 받는다는 것이다. 엑스텐션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먼저 법률사무소에서 많이 취급하는 법조양성제도, 부동산 임대차, 도급, 복지와 법, 형사사건, 소년사건, 소비자보호, 이혼, 파산, 주택하자, 교통사고, 상속, 예금자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우선 실무자 교수의 지도(가이던스)를 받는다. 그런 다음 재판관과 변호사로부터 법률실무에 대해 개략적 강의를 듣는다. 이후 3개 반으로 분반되어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는다. 연수는 여름 방학 기간 종료 직전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다. 카나가와 로스쿨은 이 엑스텐션을 위해 로스쿨 교수와 요코하마 변호사회의 로스쿨 담당 변호사로 이루어진 '엑스텐션 실시 담당위원회'(위원장은 로스쿨 학장)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학기 중에 수회 열리는 데 여기에서 엑스텐션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4. 일본 임상법학교육의 특징

35) 실무자 교수 5명이 중심이 되어 대체로 매월 1회 담당을 한다. 연구자 교수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교수도 교대로 참가한다. 참가 학생은 한 번에 3명까지로 한다.

36) 연구자 교수 1인과 실무자 교수 1인이 담당하는 데, 월 1회 상담을 하며 참가학생은 5-10명이다.

37) 국제인권법 교수인 아베코키 교수와 요코하마 변호사회의 인권옹호위원회로부터 교대로 파견되는 변호사 1명이 담당한다. 월 1회 상담을 하며 참가학생은 5명 정도이다.

필자가 일본의 로스쿨에서 임상법학을 주도하는 교수들을 직접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판단하건대 일본의 임상법학이 지향하고 있는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교육 목적 중시

임상법학의 중요한 목적은 단지 현재의 실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실무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되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자세로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것을 표방한다. 리걸 클리닉에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제1의 수임 기준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느냐이다. 따라서 와세다의 경우는 무료 법률서비스인 리걸 클리닉 이용자의 제한을 무조건 저소득 생활자로 국한하지 않는다. 비록 생활이 중산층이라도 사건 자체가 로스쿨 학생의 교육을 위해 취급하는 것이 좋다면 그것을 수임한다고 한다.³⁸⁾

나. 적극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의 개발

일본 로스쿨이 현재 시도하는 임상교육 중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적극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이를 소위 ‘로이어링’ 교육이라고도 함)을 통한 전문화된 법률가의 양성이다. 대표적으로 두 학교의 방식을 들 수 있는데 하나가 나고야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IT 활용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가 관서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모의법률사무소 프로젝트이다. 전자는 면접, 심문, 교섭 등의 변호사의 업무 기능에 대하여 역할 분담을 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한 뒤,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그 기능을 익혀 가는 과정을 말한다. 디지털화된 영상이므로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을 찾아 교육이 가능하다. 후자는 학교에 몇 개의 모의 법률사무소를 만들고 이곳에 일반 시민이 모의 의뢰인으로서 찾아와 모의 법률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시민으로부터 법률서비스의 질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고 모의 법률사무소 간의 경쟁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교육은 개개의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 이것은 법조의 기능을 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 지식과 이론의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또 섭외계약과 같은 고액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현실의 거래 사례를 소재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학생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한다.³⁹⁾

38) 이 때문에 와세다 리걸 클리닉의 민사 클리닉의 경우는 아예 명확한 소득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고 법률부조협회의 부조기준(전 인구의 20% 상당) 보다도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50%까지의 소득 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宮川成雄, “法曹養成のための臨床法學教育”, 「法曹養成と臨床法學教育」(宮川成雄 編), 8-9頁)

다. 다양한 사회 공헌에 대한 지향성

임상법학은 단지 로스쿨 학생들에게 법조인의 실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률가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일본의 임상법학에서는 주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많은 로스쿨의 임상교육의 내용을 보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준비하고 있다. 예컨대 오미야 로스쿨에서는 24시간 클리닉을 만들어 야간이나 주말에도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가고시마 로스쿨은 낙도의 주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만들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와세다 로스쿨에서는 외국인 난민 등에 대한 클리닉을 만들어 이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리츠메이칸 로스쿨은 ‘여성과 인권’ 클리닉을 만들어 가정 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자의 구제에 주력하고 있다.⁴⁰⁾

5. 일본에서의 임상법학의 과제

일본의 로스쿨은 그 역사가 짧다. 그러니 아직 임상법학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전문가들이 일본 임상법학의 장래의 과제로 내걸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계 기관과의 연대 강화

임상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관련기관 법원, 검찰 등의 사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률부조협회 및 공설변호사 사무실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들 기관이 로스쿨 학생들의 견학이나 연수 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엑스텐션과 같은 임상법학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⁴¹⁾

나. 인적 자원의 확보

임상법학은 이제까지 연구자 중심의 교수 사회가 하기에는 벅찬 분야이다. 이 분야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무가 출신의 교수가 담당하는 것이 정통이다.⁴²⁾ 그러나 실무가라고 해

39) *Ibid* 9頁

40) *Ibid* 10頁

41) 道 あゆみ、前掲論文, 185頁

42) 여기에서 실무가 출신 교수라 함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실무가 가능한 교수를 말한다. 물론 실무가가 로스쿨 전임교수가 되면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업을 겸업할 수 없지

서 모두가 임상법학 교육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법학교육이니만큼 교육자적 자질과 이론적 토대를 갖춘 실무가이어야 한다. 이러한 실무가들을 다수 확보하지 않고서는 임상법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다. 나아가 리걸 클리닉 과정에서는 주임 교수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실무 지도를 할 수 있는 실무 변호사들을 다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⁴³⁾

다. 경제적 지원의 확보

임상법학 교육은 단지 칠관과 백묵만 있으면 되는 교육 방법이 아니다. 법률사무소를 만들어야 하고 실무 변호사를 뽑아야 하며 각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원은 로스쿨 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미국이라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임상법학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 이후의 민관의 지원에 힘 입은 바가 컸다. 그런데 이러한 민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법학 교육의 사회적 효용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질 높은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 없으면 민관의 지원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⁴⁴⁾

라. 제도적 지원

임상법학 교육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 두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⁴⁵⁾

첫째는 학생들의 임상법학 내에서의 일정한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로스쿨 학생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즉, 현재의 사법연수생들에게 국선변호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 학생들이 리걸 클리닉 등에 참여하여 임상법학 교육을 받는 것은 단지 수동적 지위에서 지도교수가 하는 것을 참관하는 것 이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대로 미국의 일부 주는 지도교수의 감독을 조건으로 법정에서의 변론까지도 로스쿨 학생에게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임상법학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협조 의식의 공유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⁴⁶⁾

만 변호사로서의 실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야만 리걸 클리닉 등에서 변호사로서 사건을 담당하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을 이야기하며 변호사 출신 교수들에게 휴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것은 임상법학 교육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한참 잘못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3) 道 あゆみ、前掲論文, 185-186頁

44) *Ibid.* 186頁

45) *Ibid.* 186-187頁; 須綱隆夫, 前掲論文, 26-29頁

46) 필자가 와세다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변호사 법인 와세다 리걸 클리닉)에 가서 그곳 교수들과 간담을

둘째는 사법시험과의 관계이다. 임상법학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의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한다. 만일 로스쿨 학생들에게 사법시험의 부담이 크다고 하면 임상법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의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학교도 이에 큰 투자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임상법학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⁴⁷⁾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로스쿨에 대한 평가에 임상법학을 높게 반영시키는 것이다. 임상법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장차 불이익을 주고 로스쿨의 대열에서 도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임상법학 교육은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6. 소결

이상의 소개에서 본 일본 로스쿨의 임상법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함에 있어 임상법학의 중요성을 알고 상당한 준비를 했으며 이것은 현재 각 로스쿨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도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로스쿨은 미국의 임상법학을 벤치마킹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상법학의 내용을 대체로 3가지로 이해했다. 그것은 법률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의 실제적 처리를 경험케 하는 리걸 클리닉 과정(협회의 리걸 클리닉이라 함), 법률사무소 등에 로스쿨 학생을 보내 연수케 하는 엑스텐션 과정 및 교육 내용 중에 변호사의 업무를 가상으로 해 보는 시뮬레이션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깊이 있게 토론되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일본의 로스쿨 리걸 클리닉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 사건의 처리라고 한다. 형사 사건은 사건의 본질상 체포 구금된 당사자를 만나야 되고,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야 한다. 즉, 리걸 클리닉에서 교육을 받는 로스쿨 학생들이 형사사건의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의 과정을 지도 교수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 및 관계 기관이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교수와 함께 피의자를 접견하러 갔을 때 학생은 접견권이 없다며 접견신청을 거부한다거나 수사기록의 열람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대며 열람 목적을 제시하라고 하고 그것이 임상법학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형소법상 허용이 안 된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관계기관의 양해로 거의 해소는 되었지만 여전히 로스쿨 학생의 법적 지위가 빈약하므로 앞으로도 재연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로스쿨 학생 실무교육 규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면 다음 글을 참고. 피터·A·جوی, 刑事クリニックの創設-アメリカの経験と課題-(四宮 啓 譯), 「法曹養成と臨床法學教育」(宮川成雄編), 成文堂(2007), 35-46頁

47) 일본의 로스쿨은 종전 소위 '점'으로서의 법조인 양성에서 법과대학원, 사법시험, 사법수습이라고 하는 3자의 '과정'으로서의 법조인 양성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합격률도 70% 이상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로스쿨이 원래의 예상보다 많아져 입학 정원은 2006년 현재 전국 74개 로스쿨에 5,800명을 상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니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예상외의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전체 응시자(로스쿨 출신자)의 50% 정도만이 합격하였고, 2007년의 경우는 30% 정도만이 합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로스쿨이 가장 신경 쓸 일은 현실적으로 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지 임상법학 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관심 범위에서 멀어 질 수 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須藤隆夫, 前掲 論文, 27頁

셋째, 일본의 로스쿨 중 일부(예컨대 와세다 로스쿨)는 위의 리걸 클리닉 과정을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 학내에 미국식의 법률사무소를 만든 곳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초 현재 전국적으로 9개 로스쿨이 학내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⁴⁸⁾

넷째, 지방의 소규모 로스쿨은 지역 변호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임상법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경의 대형 로스쿨과 다른 상황에서 임상법학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된 방법이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도 임상법학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능력 있는 실무가 교수의 확보, 민관의 협력 및 로스쿨 학생들이 임상법학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한 및 사법시험 합격률 등 현실적인 문제가 풀려함을 알 수 있다.

필자가 보건대, 위의 일본의 상황은 우리가 로스쿨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대부분 참고가 될 만한 상황이자 과제임이 분명하다.

IV. 한국에서의 임상법학의 필요성과 성공을 위한 과제

1.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한국 사회에서 로스쿨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10년이 넘는다. 그렇지만 그 논의는 모두 정책담당자 혹은 로스쿨 주도자나 그 반대론자의 로스쿨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였다. 로스쿨을 도입을 전제로 어떤 식의 로스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7월 로스쿨 법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됨으로써 전국의 상당수의 법과대학은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던 학교에서 막상 인가 준비를 한다고 하니 인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이러저러한 교육을 하겠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각 학교가 말잔치 혹은 서류잔치 속에서도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임상

48) 9개 로스쿨이라 함은 大宮法科大學院大學, 中央大學, 法政大學, 專修大學, 스쿠바大學, 岡山大學, 九州大學, 山梨學園大學, 早稻田大學의 각 로스쿨을 말한다.

법학의 문제이다.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대충 로스쿨에 들어오는 실무가 교수들이 담당하는 것으로나 알고 있는 듯하다.⁴⁹⁾ 실무자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실무교육은 될 것이니 염려가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오산이다. 실무교육은 실무가가 로스쿨에 들어온다고 하여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⁵⁰⁾

필자가 보는 바로는 우리의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로스쿨을 지향한다. 로스쿨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실무교육이 전제되지 않은 로스쿨은 미국식 로스쿨이 아니다. 우리의 로스쿨법도 분명히 로스쿨의 목적을 '법조인의 양성'이라고 뜻을 박았고⁵¹⁾, 교육이념에서도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고 함으로써 로스쿨의 기본적인 방향은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⁵²⁾ 그러므로 향후 설치될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법조인에 걸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하며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임상법학이 아니면 안 된다.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에서 임상 의학을 교육시키지 않고 의사 면허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임상법학의 내용이나 정도가 지금의 사법연수원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실무에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로스쿨은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로스쿨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의 전제이자 존속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2. 임상법학의 최소한의 내용

향후 한국의 로스쿨에서 해야 할 임상법학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것이 요구될까. 지금으로서는 일본에서 미국의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49) 로스쿨 법률이 통과 되기 전의 과정으로 2004년 운영되었던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인 '사법개혁을 위한 최종 건의문'(2006. 12. 31)의 법학전문대학원 부분에도 실무교육의 중요성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실무가 출신 교수 채용이 일정 비율(전임교수 중 20%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만 나온다. 임상법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50) 그러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였던 모양이다. 현재까지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법개혁추진단에서는 미국의 로스쿨 상당수를 방문하여 그곳의 실무교육을 확인한 바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로스쿨 실무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2005. 11) (<http://www.pcsr.go.kr/>) 참고.

51) **법학전문대 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52) **학전 대학 설·운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그 내용은 다음의 사항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 리걸 클리닉의 설치와 운영

적어도 로스쿨은 부설 리걸 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⁵³⁾ 이 리걸 클리닉은 최소한은 무료 법률상담소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학교 내에 설치되는 법률사무소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리걸 클리닉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로스쿨 학생은 강의실에 배운 법률지식을 교수와 함께 임상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로스쿨 2-3년 과정에서 필수 과정으로 이수케 해야 한다.

나. 엑스틴션쉽

로스쿨은 다양한 기관과 법률사무소에 학생을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 대해 일정한 기간 이들 기관에서 연수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관련기관 연수나 법률사무소 등지에서 하는 시보생활의 축소적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한 달 이내) 모든 로스쿨 학생들은 로스쿨 과정 중 한 군 데 이상의 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로스쿨은 프로그램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시뮬레이션 교육

로스쿨의 실무교육은 변호사로서의 실제적 행동 양식을 배우는 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법정에서의 태도나 각종 소송에서 변호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모의 실험이 교과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도입되는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을 고려할 때 더욱 필요하다. 배심원 앞에서 무죄주장을 하는 변호사를 상상한다면 그가 배심원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야 할 지 그 전문적 스킬을 로스쿨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이런 교육은 모의재판 등의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이수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한국에서 임상법학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

가. 수준 높은 실무가들의 로스쿨에의 참여

임상법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실무가들이 다수 로스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단순

53) 변호사 출신인 김용섭 교수도 로스쿨에서의 송무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리걸클리닉을 설치하여 임상실무 연습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강조한 바 있다.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 「저스티스」, 통권 99호(2007. 8), 182면

히 실무가라는 배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학 교육이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실무가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대학의 실무가 영입과 로스쿨 인가 기준에서의 실무가에 대한 요건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첫째, 무엇보다 실무교육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실무가들을 교수로 채용하면서도 변호사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교수를 하면서 변호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실무가들은 변협 및 지방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적인 사건을 처리를 위해 법정에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임상법학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격이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로스쿨 인가기준은 완전히 휴업을 전제하고 있으니 이것은 임상법학 교육이 전혀 전제되지 않은 규정이다. 적어도 실무자 출신의 교수가 실무교육을 위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⁵⁴⁾

둘째, 실무가 출신들에게도 전임교수인 경우 기본적으로 연구가 출신의 전임교수와 같은 정도의 연구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도와 방법이 문제이다. 실무가들이 법학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실무 지향적 교육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 평가도 실무 교육에 맞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가의 과거 경력 중 특정 분야의 실무 경력 및 그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인가 기준에서 말하는 전임교수의 연구실적 평가는 연구가 출신과 실무가 출신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연구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실무가의 교육 능력 평가로 적절한 지 의문이다. 이런 평가제도는 중국적으로 실무가 출신 교수들을 기존의 연구자 교수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을 중시하는 로스쿨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필자의 견해로는 실무가에 대한 평가 제도는 현재까지의 연구자 중심의 평가와는 달라야 한다고 본다. 해당 실무가의 전문적 영역에서의 활동 결과(소송활동/각종 단체에서의 활동/학술지와 관계없이 각종 매체에 실은 해당 분야의 글의 수와 질 등)를 기초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 리걸 클리닉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입법적 근거의 필요성

현재의 우리의 법(특히 변호사법)에서 로스쿨 부설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비록 부설 클리닉이 비영리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법률사무소(소송도 가능한

54)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의과대학의 교수에게 부속 병원에서의 의료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면서 의과대학의 임상교육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를이 없다. 이에 대해 김용섭 교수도 변호사 출신의 실무교원에 대하여 변호사 활동을 부분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용섭, 위 논문, 182면

사무소)의 운영 주체가 로스쿨(혹은 로스쿨이 소속한 대학)이 된다는 것은 언뜻 비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소 운영이 될 수 있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학내 법률 사무소를 만드는 방법은 일본과 같이 하면 못 할 바는 아니다. 즉,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독립적인 법률 사무소를 만들고 그 비용은 대학이 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구차한 방법이다.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대학이 직접 설치하지 못하고 학교의 전임 교수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만들고 그 비용을 대학이 지불하는 방법은 편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⁵⁵⁾ 따라서 우리는 일본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로스쿨(대학)이 임상법학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법무법인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임상법학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정한 정도의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리걸 클리닉에 참여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특정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실무 경험의 정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변호사인 지도교수의 감독을 전제로 로스쿨 학생들에게 적어도 사법연수생 정도의 권한(국선변호 등) 등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⁵⁶⁾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에 근거를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법원 규칙으로 가칭 '법과대학원 학생의 실무 수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 변호사 단체 등의 적극적 지원

임상법학을 실시하는 데 변호사 단체의 역할은 지대하다. 변호사단체는 법조의 모체이니 만큼 새로이 양성되는 미래의 법조인들의 교육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로스쿨은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변호사단체의 각종 공익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하고 법률 사무소로 학생들을 보내 일정기간 동안 엑스턴십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로스쿨 학생의 실무교육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의 로스쿨은 변호사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의 경우는 변호사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수의 법률사무소가 있으므로 학교와 법률사무소간의 개별적인 협정으로 임상법학교육에 필요한 실무 변호사의 협력을 얻을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변호사회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지방에 설치되는 로스쿨은 각 변호사회와 특별한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가

55) 더욱, 현재 논의되는 것으로 보면 실무자 출신 교수들은 모두 로스쿨이 되기 전에 변호사를 휴업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런 법률 사무소를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6) 현재 사법연수생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 실무 수습 중 수습의 목적 내에서 법조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법원조직법은 사법연수생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국선 변호인 근거 규정(제72조 4항)을 두고 있으며, 검찰청법은 사법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해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생에 대해 검사직무대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32조 1항)을 두고 있다.

능하다면 향후 변호사법에 로스쿨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화하는 것도 임상법학에 대한 변호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대한변협의 역할

한국에서 임상법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변협은 향후 로스쿨법상 로스쿨을 평가하는 기관이다.⁵⁷⁾ 따라서 변협이 임상법학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그것을 각 로스쿨에 독려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는 상황이 될 것이다. 변협이 임상법학에 관한 강한 의지를 갖는다면 일선의 로스쿨 입장에서는 변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변협은 로스쿨이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변협 내에 로스쿨 인가와 관련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의 변호사단체(그중에서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임상법학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

(논문게재확정일자 : 2007. 8. 20.)

주제어 : 로스쿨, 법과대학원, 임상교육, 임상법학교육, 리걸 클리닉, 시뮬레이션, 엑스틴션

57) 법 전문 학원 치· 영에 관한 법 제27조 이하에 의하면 향후 로스쿨은 로스쿨의 교육 등에 관하여 그 준수 여부를 평가 받도록 되어 있다. 이 평가를 하는 기관이 변협에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다.

< 참고 문헌 >

한국 자료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 「저스티스」, 통권 99호(2007. 8)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인 ‘사법개혁을 위한 최종 건의문’(2006. 12. 3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로스쿨 실무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2005. 11)
문재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및 교육 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집(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4. 21.)

일본 자료

道 あゆみ, “法科大学院における臨床教育の有用性を探る”, 「로스쿨의臨床教育의100年史」, 現代人文
社 (2005).
Paul Bergman, “A ‘Lawyering Skills’ Approach to Clinical Education”, (宮川成雄 譯: 臨床法學教育:
「ローヤリング」機能からのアプローチ), 「法科大学院と臨床法學教育」(宮川成雄 編), 成文堂(2003).
宮川成雄, “法科大学院における 臨床法學教育の 可能性”, 「法科大学院と臨床法學教育」(宮川成雄 編), 成文
堂 (2007).
須網隆夫, “日本における 臨床法學教育の 發展と 課題”, 「法曹養成と臨床法學教育」(宮川成雄 編).
早稻田大學大學院法務研究科, 「リーガルクリニックによる臨床法學教育に 關する 理論的 實踐的 研究」, 2
007. 5.
榎本康浩, “國立大學法科大学院におけるクリニックの 實情”, 「로스쿨研究」(2006. 6).
田村智幸, 로어ヤリング=クリニック, 法律文化社, 2006.
日弁連法務研究財團 編, 日本型 로스쿨における教育方法, 商事法務, 2005.
日弁連法務研究財團 編, 法科大学院における 教育方法, 商事法務, 2003.
Developments and Challenge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Japan: Collaboration of Academics and
Practitioners, Waseda Bulletin of Comparative Law, Vol. 25(2005)

<Abstract>

Clinical Legal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s: Agendas and Approaches

Chan Un Park

After onerous discussion that raged on for the last 10 years, the statute establishing law schools in Korea w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7. A number of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eager to establish their own law schools have been hustling preparations to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government. These universities have announced their new plans of vast investment for facilities and enlargement of their faculties.

The author is, however,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legal education in the newly adopted law school system has not ye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although the law school system is aimed to prepare students for success in law practice. In particular, clinical legal education is hardly known to Korean legal academics, as well as to practicing lawyers.

In this vein, the article introduces the actual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n Japan and explores possible model of clinical legal education for Korean law schools. In particular, the Japanese clinical legal education is stressed, for Japan's experiences adopting law school system into its legal system provides precious references for Korea.

Firstly, the US clinical legal education has been discussed. According to the study by the author,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has become a major course in the most law schools in the U.S.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including legal clinics on campus, simulation courses for lawyering and externship programs.

While the history of law schools in Japan is relatively short, yet the Japanese law schools have developed clinical legal education comparable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Japanese clinical legal education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he so-called "legal clinic," in which law school students are involved in actual cases for clients under the close supervision of clinical professors in a law offices attached or associated with their law schools. The second type is the simulation. While students are not involved in any actual cases, students study with case materials under supervision of professors. The role play method may also be used in simulation. The third one is externship, in which law students are engaged in legal practice outside their law schools for a certain period. The institutions for externship may include law offices, governmen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egal departments of corporations. Then the problems in clinical legal education and agendas to overcome the problems are discussed.

Finally the author makes suggestions to introduce clinical legal education to law schools in Korea. Given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of Japan, it would be best for Korean law schools to adopt such legal education methods. Without doubt, Korean law school systems cannot be successful without clinical legal education for students, as students are expected to practice after law schools. To this end, bar associations including Korean Bar Association should play a major role for the successful clinical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s, for example, by developing and recommending guidelines for clinical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s or by establishing cooperation with law schools.

Key words : law school; clinical education; clinical legal education; legal clinic; simulation; externship